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49 | 2024.08.19 (2024.08.12~08.18)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상임(특별)위원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48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8.12~08.18)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산업통상자원부>는 ▲ 산업용 섬유시장의 급속한 성장 ▲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가속화되는 친환경 전환 요구 ▲ 제품 기획·생산·유통 등 전방위로 확산되는 디지털 전환(DX)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함.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을 통해 ① 첨단 산업용 섬유 육성, ② 섬유패션 밸류체인의 친환경 전환, ③ AI·디지털 적용 확산, ④ 섬유패션산업 기반 강화 등 4대 분야를 중점 추진키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국, 인도 등 후발국의 추격 등으로 국내 생산기반이 위축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2030년까지 산업용·친환경 섬유 분야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현재 2~3%)하고 디지털 전환 수준을 60%(현재 35%)까지 높임으로써 섬유패션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기기에 직접 탑재되는 ‘온-디바이스 AI’가 전 산업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가전, 방산 등 업종별로 AI 기술과 국내 반도체 적용 현황을 진단하고, 산업 맞춤형 고성능·저전력 AI 반도체(‘엣지용 반도체’) 개발·적용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산업부는 7대 산업(자동차·IoT/가전·기계·로봇·에너지·바이오/의료·방산) 분야의 인공지능(AI) 반도체를 게임체인저로 육성키로 하고, 업계에서 건의한 ① 수요연계 대규모 R&D, ② AI 반도체 개발·생산 인프라 구축, ③ 팹리스 스케일업을 위한 대규모 금융, ④ 우수한 설계인력 양성 등 제기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금년 하반기 「**AI 시대, 시스템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망분리로 인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업무상 비효율이 클 뿐만 아니라, 신기술 활용이 저해되고 연구·개발이 어렵다는 규제 개선요청이 지속 제기된 바 있고 특히, 소프트웨어 시장이 자체 구축형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구독형(SaaS)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생성형 AI의 활용이 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상황에서, 망분리는 업무상 불편을 넘어 금융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망분리 도입 이후 약 10년이 경과한 지금,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금융 보안 법·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등 혁신과 보안의 새로운 균형을 찾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8월 22일(목) 전 업권 업무 설명회, 9월까지 업권별로 업무 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 중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접수받아 연내 신규 과제에 대한 혁신 금융서비스를 지정하고 이에 따라, 빠르면 올해 말부터 금융권에서도 생성형 AI 활용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입법(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청약 예·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의 청약에 신청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자는 그 지위를 유지하면서 다른 청약에의 신청·당첨을 허용하며, 1983년부터 현재까지 월 10만원으로 유지되던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한도를 소득증가 및

소득공제 한도 변경 등 정책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월 25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 근거를 신설하고, 공익사업의 대토보상자가 공동주택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우선공급을 허용하기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정부는 등기신청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서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며,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해서도 등기를 전자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서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기록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및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회사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며,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등기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이사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나아가 회사의 합병 등에 있어 불공정한 합병비율 등으로 주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이사에 합병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주의 이익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1인)」,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범죄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청문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즉시 등록이 취소되도록 하며,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험설계사 등에 의한 보험사기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의원 등 12인)」,

하도급거래 계약에서의 부당한 특약은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도록 함으로써 원사업자가 문제 되는 특약을 설정할 유인을 제거하여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에도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재화등의 대금 정산기한을 소비자가 해당 재화등의 구매를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판매를 의뢰받아 판매한 재화등의 대금 보유와 관련하여 이를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은행에 예치·신탁하고, 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판매된 재화등의 대금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

대부업자의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대부업자가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자계약 부분을 무효로 하면서 불법대부업자의 경우에는 그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며, 대부중개플랫폼을 활용하는 대부중개업자는 시·도지사가 아닌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불법대부업자의 대부중개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1인)」 ,

경영개선을 위한 감독과 규제를 허가를 받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니라 등록된 전자금융업자로까지 확대하여 모든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의 경영개선에 대한 책임 및 규제를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4인)」 ,

청소년의 SNS 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해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SNS 일별 이용 한도 설정과 중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친권자등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소외와 차별 없이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고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는 환경 조성 및 그 지향점을 “디지털 포용”이라 정의하는 등 디지털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본 틀을 마련하면서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디지털포용 증진법안(박민규의원 등 12인)」 ,

앱 마켓사업자가 자기 앱 마켓 외부에서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다른 결제방식을 허용하도록 하여 이용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결제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에 따른 경쟁활성화를 통해 이용자와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등 18인)」 ,

농업인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우선구매, 컨설팅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재생에너지 생산·보급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모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 ,

LPG차량이 LPG충전소에서 자가충전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현행 LPG충전소가 미래 용·복합충전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친환경연료 충전소로의 전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용수시설, 소화수조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상에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3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3인)」 및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5인)」,

우리나라에 만연한 노동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체불임금의 신속한 청산을 통해 노동자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노동자의 체불임금에 대하여도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연장하며, 고의 또는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징벌적 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체불임금을 계속 변제하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3인)」,**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따라 가산되는 금액을 각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거나 이를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형태의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동시에, 임금대장의 기재사항에 ‘실제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수’를 추가하고, 근로자가 임금대장에 대한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수에 대한 정확한 기록·관리 및 임금산정이 되도록 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1인)」,**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장시간 근로 해소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신설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1인)」,**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에 폭염, 혹한 및 다습 등의 기상여건이나 고열작업 등에서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명시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3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에게도 작업중지권을 부여하여 이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0인)」** 등이 제출 및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금주(8/19~8/25)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8/21), <행정안전위원회>는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8/2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소관 법안에 대한 심사를 거쳐 전체회의 의결(8/21), <보건복지위원회>는 2023년도 결산 및 법안 상정이 예정(8/20),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김문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이 예정(8/19), <국토교통위원회>는 8/19~8/20 각각 법안심사소위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발표(산업통상자원부) 9
- ‘AI 반도체 기업 간담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10
-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발표(금융위원회) 12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7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환경부) 18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 18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 19
-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9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식품의약품안전처) 2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21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 22
-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22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23
- 주택도시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23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5
-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6
-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7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7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1인) 28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의원 등 12인) 28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28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의원 등 12인) 29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1인) 29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4인)	30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35인)	3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34인)	3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3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의원 등 10인)	3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1인)	32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0인)	33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33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3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3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등 15인)	34
• 디지털포용 증진법안(박민규의원 등 12인)	35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등 18인)	36
•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	36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37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20인)	38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8인)	38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39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3인)	39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김성환의원 등 29인)	40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2인)	41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2인)	42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2인)	42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0인)	43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4인)	43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3인)	44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1인)	45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1인)	46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1인)	46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1인)	46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3인)	47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0인)	47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1인)	48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1인)	49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4인)	49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49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5인)	50
• 중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1인)	5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24인)	52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52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3인)	53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상임(특별)위원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48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8.05~08.11) [바로가기](#)

- **[중대재해]** 대학교에서 벌목 작업 중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 **[소송]** 태양광발전장치 업체들의 직접생산확인 기준 위반을 이유로 한 조달청 제재처분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 **[지적재산권]** 뮤지컬에 사용된 음악을 2차적저작물로 인정하고, 저작권관리단체가 신탁 사실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이중양수의 경우에도 대항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동남아시아]** 싱가포르 리츠(S-REITs) 차입한도 완화 고려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발표

- 글로벌 섬유패션 강국으로 재도약 추진
- 첨단 산업용 섬유 육성, 친환경 밸류체인으로 전환, 섬유패션에 AI 확산
- 2030년, 산업용·친환경 섬유 글로벌 점유율 확대 (2%→10%) 목표

2024-08-13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섬유패션산업의 현안과 향후 방향을 위한,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함. ▲ 산업용 섬유시장의 급속한 성장 ▲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가속화되는 친환경 전환 요구 ▲ 제품 기획·생산·유통 등 전방위로 확산되는 디지털 전환(DX)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됨

이번에 발표된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을 통해 산업부는 ① 첨단 산업용 섬유 육성, ② 섬유패션 밸류체인의 친환경 전환, ③ AI·디지털 적용 확산, ④ 섬유패션산업 기반 강화 등 4대 분야를 중점 추진함. 이를 통해 중국, 인도 등 후발국의 추격 등으로 국내 생산기반이 위축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2030년까지 산업용·친환경 섬유 분야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현재 2~3%)하고 디지털 전환 수준을 60%(현재 35%)까지 높임으로써 섬유패션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제시함

주요 전략 내용으로는

① 첨단 산업용 섬유 분야를 육성하여 섬유패션산업의 고도화 추진

- 고성능 아라미드, 고강도 탄소섬유, 내극한 해양 수산섬유, 해외 의존 중인 환경용 첨단 섬유, 차세대 전자통신 섬유 등 첨단 산업용 섬유의 핵심기술을 2030년까지 세계 최고수준으로 확보할 계획
- 금년 하반기부터 「산업용 섬유 얼라이언스」를 운영하여 유망제품과 기술발굴을 진행하고, 산업용 섬유의 품질과 성능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지원하기 위한 「테크섬유 제품 인증평가 지원센터」도 내년에 구축
- 의류기업의 산업용 섬유로의 품목 전환시 기술 컨설팅과 함께 설비투자도 정책금융('24년 2.9조원) 등을 활용하여 지원

② 섬유패션산업 밸류체인의 친환경 전환 지원

- 2030년까지 폐의류를 재활용(Fiber to Fiber)하는 리사이클 섬유, 버섯 등 식물기반의 비건 가죽 소재 등 바이오매스 섬유, 자연환경에서 90% 이상 분해되는 생분해 섬유 제조기술 확보 추진
- 물을 사용하지 않는 염색기술 개발 등 3대 오염 배출 공정인 「염색, 가공, 복합재 제조」 분야의 폐수 감축, 에너지 효율 개선에 310억원을 투입하여 섬유패션 생산공정을 친환경·저탄소 공정으로 전환을 지원하고, '26년까지 200개 이상의 중소기업에 폐열 회수설비 등을 보급하여 공정 개선을 지원해 나가기로 함
- 섬유패션기업의 공정 특성을 반영한 '탄소배출량 측정 표준모델'을 '26년까지 구축·보급하고, 섬유패션 제품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을 유도하는 「K-Eco Design 가이드라인」을 '25년에 도입('26년까지 제도 안내 후 '27년 시행 추진)하는 등 친환경 규범 마련

③ AI 기술 적용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

- 신제품 기획을 데이터와 AI를 활용해 시장수요를 예측하고, 디자인 기간을 80% 이상 단축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26년까지 개발하고, 기업 간 협업으로 신속 생산이 가능한 「커넥티드 마이크로 팩토리*」 구축을 위한 기반도 금년부터 마련할 예정

* 커넥티드 마이크로 팩토리(Connected Micro Factory) : 인근 공장들의 설비, 재료, 인력 현황 등 생산정보를 통합시스템으로 연결
→ 생산량, 재료 활용, 공장간 협업 등에 AI · 디지털 기술 활용

- 반복 공정, 인력부족이 심한 공정을 대상으로 자동화 설비를 '28년까지 250개 이상의 기업에 보급 추진
- 메타패션(가상의류) 시장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체험 · 창작 공간인 '메타패션 플레이그라운드' 확대(1→3 개소)

④ 섬유패션산업의 기반 지속 강화

- 섬유패션 분야에 확산되는 친환경 · 디지털 등 하이테크 분야의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석 · 박사급 전문 인력을 '28년까지 1,000명 양성
-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글로벌 환경인증 획득,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확대 등과 함께 공공분야에 우수한 국산섬유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

비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섬유패션 강국		
목표	첨단 산업용 시장 육성	친환경 시장 확대	AI·디지털 혁신 선도
	▶글로벌 산업용섬유 점유율 :('23) 3% → ('30) 10%	▶글로벌 친환경 시장점유율 :('23) 2% → ('30) 10%	▶디지털 전환 수준 :('23) 35% → ('30) 60%
2+2 추진 전략	글로벌 경쟁력 확보	① 첨단 산업용 섬유 육성을 통한 구조 고도화 + ② 섬유패션산업 밸류체인의 친환경 전환 +	
	산업 체질개선	③ 섬유패션산업의 AI · 디지털 적용 확산 ④ 섬유패션산업의 기반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7대 산업 인공지능(AI) 반도체를 게임체인저로 육성

- 자동차, 가전 등 7대 주력산업별 맞춤형 엣지 반도체 개발 · 적용 추진
- 올 하반기 「AI 시대, 시스템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방안」 발표 계획

2024-08-14

산업통상자원부는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SW 기업 등 국내 AI 반도체 공급기업, 주력산업에 AI 도입을 추진중인 현대자동차, LG전자, 한화시스템 등 수요기업과 함께 AI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함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기에 직접 탑재되는 ‘온-디바이스 AI’가 전 산업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가전, 방산 등 업종별로 AI 기술과 국내 반도체 적용 현황을 진단하고, 산업 맞춤형 고성능·저전력 AI 반도체(‘엣지용 반도체’) 개발·적용 방안을 논의함

업계 참석자들은 주력 제조산업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AI 내재화가 필요하며, 우리 반도체 산업은 역량있는 설계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기에 온-디바이스 AI 산업이 성장할 여건이 충분하다고 평가함. AI 반도체 시장에서 현재 엔비디아 등 일부 기업들이 ‘서버용 반도체’는 주도 중이나, 우리는 주력 업종과 협력을 통해 현장에 최적화된 ‘엣지용 반도체’를 개발하기 유리한 환경으로, 새로운 팹리스들이 진입할 기회가 열려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며, ① 업종별 맞춤형 AI 반도체 개발을 위한 수요연계 대규모 R&D 프로젝트 추진, ② AI 반도체의 개발·생산 인프라 구축, ③ 팹리스 스케일업을 위한 대규모 금융 지원, ④ 우수한 설계인력 양성 등을 건의함

정부는 업계에서 건의한 ① 수요연계 대규모 R&D, ② AI 반도체 개발·생산 인프라 구축, ③ 팹리스 스케일업을 위한 대규모 금융, ④ 우수한 설계인력 양성 등 제기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금년 하반기 「AI 시대, 시스템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할 계획임을 밝힘

정부 지원방향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요 내용으로는

① 반도체 설계 기업의 수요연계 강화

- 11개의 업종별 수요기업, 31개의 IP·팹리스·디자인하우스·SW기업 등이 참여하는 ‘AI 반도체 협업포럼’의 운영강화
- 포럼에서 나온 논의들을 토대로 우리 주력산업과 결부되고 시장 파급력이 높은 산업별 엣지 반도체를 개발하고, 산업 현장 실증과 실제 적용까지 지원할 수 있는 R&D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
- AI 반도체는 개별 칩의 성능보다 수요기업이 필요로 하는 종합 기능이 중요한 점을 반영해 정부는 IP-팹리스-디자인하우스-SW까지 포함한 촘촘한 선단을 구성해 경쟁력 있는 AI 반도체와 관련 제품·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대형 사업 기획 예정

< 업종별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 내용 >

- **(자동차)** 자율주행 및 소프트웨어 탑재 차량(SDV: Software-Defined Vehicle)에 특화된 실시간 AI 자율주행 판단 기술개발(1,000 TOPS급)
- **(IoT·가전)** 실내상황 인지 및 사용자 사용패턴, 보안 기능을 최적화한 스마트 가전, AR/VR 기기용 온디바이스 AI 모듈 개발
- **(기계)** 제조 현장 핵심 부품의 상태 모니터링, 고장 진단, 수명예측 등 스마트공장용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 및 실증
- **(로봇)** 상황 인지, 자율이동 등 기능을 지원하는 로봇용 온-디바이스 AI 반도체·모듈 기술 개발 및 AI가 내재된 로봇에 대한 실증기반 구축
- **(에너지)** 실시간 전력 수요-공급 제어용 AI 기반 예측 기술 및 전력수요 조절을 위한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기술개발 및 실증
- **(바이오·의료)** 생체센서, 의료영상 등의 실시간 분석을 통한 맞춤형 의료제품 개발, 온디바이스 AI 반도체를 활용한 자동정밀 치료기기 개발 등
- **(방산)** 고성능, 고신뢰성의 초격차 반도체를 위해 레이더 및 전자전 시스템 등에서 요구하는 AI 반도체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마련

② AI 반도체 개발·생산 인프라 구축

- 올해 9월 성남 판교에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를 개소해 AI 반도체 개발에 필수적인 고가의 장비를 활용한 설계·검증 지원
- 미국 실리콘밸리에 「한·미 AI 반도체 센터」를 구축해 팹리스의 해외진출 지원
- 개발된 칩에 대하여 파운드리 기업과 협의해 시제품 제작(MPW) 기회를 확대하고, 시제품 제작 지원 비용을 늘릴 예정

③ 팹리스 스케일업을 위한 대규모 금융 지원

- 스케일업·M&A를 목적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을 대상으로 1.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올해 3사 분기부터 본격 집행
- 현재 조성된 3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시작으로 시스템반도체 기업들의 대형화 집중 지원

④ 반도체 설계 인재 육성

- 반도체 설계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교 내 양성과정을 강화하고,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설계 엔지니어 교육과정도 신설
- 유관부처와 협의해 우수한 외국인 인재가 국내 팹리스에 취업할 수 있는 여건 개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발표

- 금융권도 생성형 AI를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출시 가능
- “자율보안-결과책임” 원칙에 입각한 新 금융보안체계 구축

2024-08-13

금융위원회는 민간 보안전문가들과 금융협회,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함.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간담회 등을 통해 금융 보안 규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애로를 직접 청취하였으며, 「금융권 망분리 TF」를 운영하여 보안전문가, 업계,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고, 그간 논의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망분리 개선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와 금융보안체계의 선진화 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하였음**

망분리로 인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업무상 비효율이 클 뿐만 아니라, 신기술 활용이 저해되고 연구·개발이 어렵다는 규제 개선요청이 지속 제기된 바 있고 특히, 소프트웨어 시장이 자체 구축형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구독형(SaaS)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생성형 AI의 활용이 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상황에서, 망분리는 업무상 불편을 넘어 금융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음

또한, 일부 금융회사 등은 인터넷 등 외부 통신과 분리된 환경만을 구축해 놓고 선진 보안체계 도입에 소홀하거나, 규제 그늘에 숨어 변화하고 있는 IT 환경에 부합하는 보안 조치도 적절히 갖추지 않는 등 오히려 금융권 보안 발전이 저해되는 부작용이 존재하는 상황임

금융권 망분리 도입 이후 약 10년이 경과한 지금, 금융당국은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금융 보안 법·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등 혁신과 보안의 새로운 균형을 찾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할 계획임

주요 내용으로는

(1) 샌드박스를 통하여 규제 애로 즉시 해소 + 별도 보안대책 병행

현행 금융보안체계가 오랜 기간동안 인터넷 등 외부통신과 분리된 환경을 전제로 구성되어 온 점을 고려하여, 급격한 규제 완화보다는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고, IT 환경 변화로 인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과제는 샌드박스 등을 활용하여 규제 애로를 즉시 해소하되, 자율보안체계 확립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보안상의 문제가 없도록 별도의 보안대책 등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예정임

① 금융회사 등의 생성형 AI 활용 허용

- 대부분의 생성형 AI가 클라우드 기반의 인터넷 환경에서 제공되는 반면, 국내 금융권은 인터넷 등 외부 통신 활용 제한 등으로 인해 생성형 AI 도입에 제약이 있는 상황임
- 샌드박스를 통해 인터넷 활용 제한 등에 대한 규제 특례를 허용한다. 이와 함께, 예상되는 리스크에 대한 보안대책을 조건으로 부과하고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이 신청 기업별 보안 점검·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임

② 클라우드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SaaS) 이용 범위 대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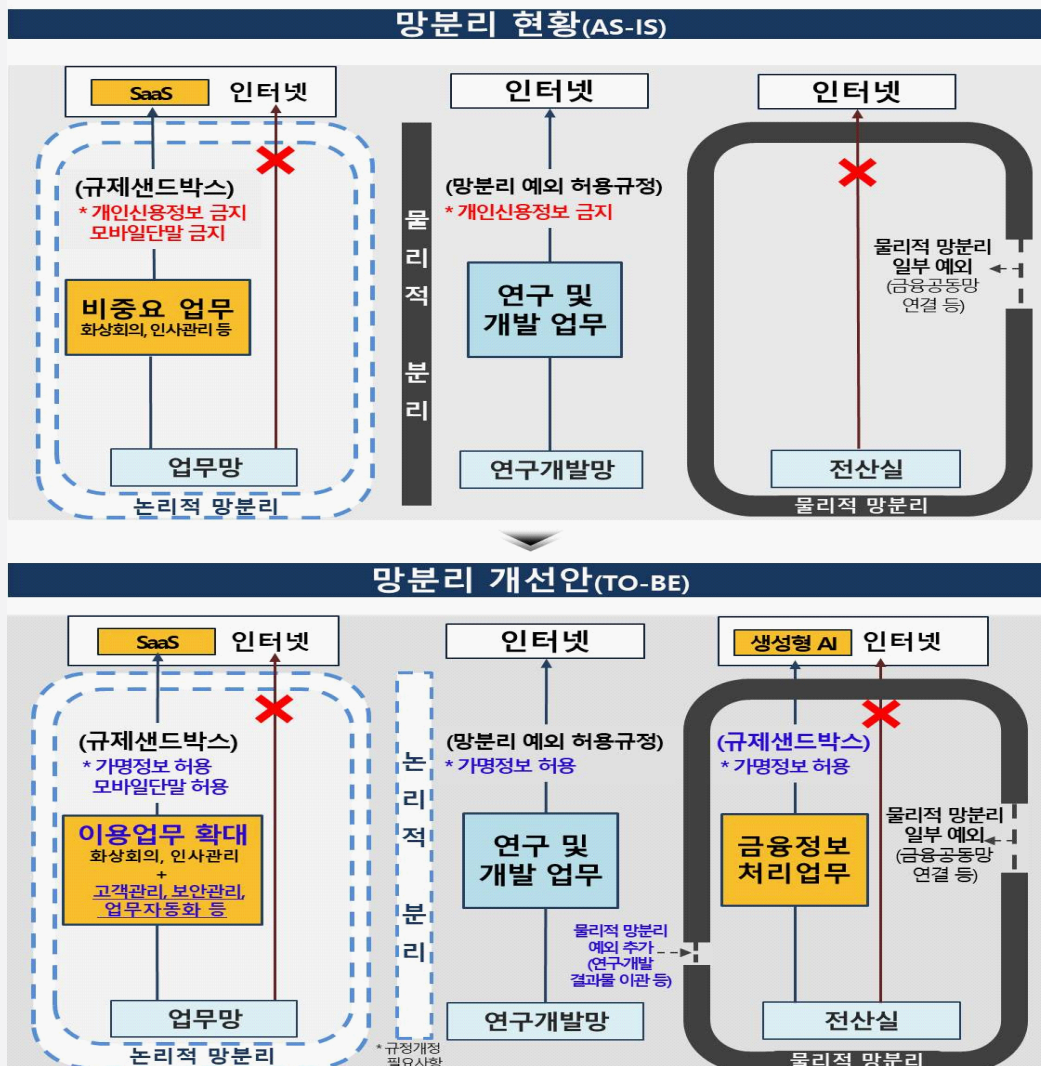
- 기존에는 문서관리, 인사관리 등 비중요 업무에 대해서만 SaaS 이용이 허용되고,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할 수 없는 등 엄격한 샌드박스 부가조건이 부과되어 활용이 제한됨
- 보안관리, 고객관리(CRM) 등의 업무까지 이용 범위를 확대하고, 가명정보 처리 및 모바일 단말기에서의 SaaS 이용까지 허용하는 등 SaaS 활용도를 제고할 예정임. 마찬가지로, 규제 특례 확대에 따른 보안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샌드박스 지정 조건으로 부과할 계획임

② 클라우드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SaaS) 이용 범위 대폭 확대

- 기존에는 문서관리, 인사관리 등 비중요 업무에 대해서만 SaaS 이용이 허용되고,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할 수 없는 등 엄격한 샌드박스 부가조건이 부과되어 활용이 제한됨
- 보안관리, 고객관리(CRM) 등의 업무까지 이용 범위를 확대하고, 가명정보 처리 및 모바일 단말기에서의 SaaS 이용까지 허용하는 등 SaaS 활용도를 제고할 예정임. 마찬가지로, 규제 특례 확대에 따른 보안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샌드박스 지정 조건으로 부과할 계획임

③ 금융회사 등의 연구·개발 환경 개선

- '22.11월 연구·개발 환경에서 인터넷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차례 규제가 개선되었으나, 연구·개발 환경의 물리적 분리 및 개인신용정보 활용 금지 등에 따라 고객별 특성·수요에 맞는 혁신적인 서비스 연구·개발에 제약이 크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됨
-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하여 금융회사 등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보다 간편하게 이관할 수 있도록 물리적 제한을 완화하고, 가명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등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



(2) 2단계 샌드박스에서는 개인신용정보까지 활용 확대

가명정보 활용을 허용한 1단계 샌드박스의 운영 성과와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될 경우, 빠르면 내년에는 2단계 샌드박스를 추진하여 금융회사가 가명정보가 아닌 개인신용정보까지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의 고도화도 추진함. 다만, 데이터 활용 범위 증가에 따른 추가 보안대책 등도 함께 부과할 예정임

(3) 샌드박스 운영 경험 등을 토대로 금융보안체계의 선진화 추진

: “목표·원칙 중심”의 보안규제, “자율보안-결과책임” 원칙에 입각한 보안체계 구축

가명정보 활용을 허용한 1단계 샌드박스의 운영 성과와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될 경우, 빠르면 내년에는 2단계 샌드박스를 추진하여 금융회사가 가명정보가 아닌 개인신용정보까지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의 고도화도 추진함. 다만, 데이터 활용 범위 증가에 따른 추가 보안대책 등도 함께 부과

- ① 누적된 샌드박스 사례를 통해 혁신성, 소비자 편익, 리스크 관리 등이 충분히 검증된 과제는 정규 제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별도의 금융보안법을 마련하여 “자율보안-결과책임” 원칙에 입각한 新 금융보안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
- ② 열거식 행위 규칙(Rule) 중심의 금융보안 규제를 목표·원칙(Principle) 중심으로 전환하고, 금융회사 등은 자체 리스크 평가를 바탕으로 세부 보안 통제를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누적된 샌드박스 사례를 통해 혁신성, 소비자 편익, 리스크 관리 등이 충분히 검증된 과제는 정규 제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별도의 금융보안법을 마련하여 “자율보안-결과책임” 원칙에 입각한 新 금융보안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
 - 금융회사 등에 부여된 자율에 따른 책임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요 보안사항의 CEO·이사회 보고의무 등 금융회사 등의 내부 보안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전산사고 발생시 배상책임 확대 및 실효성 있는 과징금 도입 등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금융회사 등의 보안 노력 제고를 유도할 예정
 -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등의 자율보안체계 수립·이행을 검증하여 미흡한 경우 시정요구·이행명령을 부과하고 불이행시 엄중 제재하는 등 금융권 보안 수준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임
 - 제3자 리스크(3rd-party risk)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도를 정비함. AI,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등 금융권의 제3자에 대한 정보처리 위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방안이 필요한 바, EU·영국 등 해외 선진사례 연구를 토대로, 국내 환경에 맞는 도입 방향을 검토하여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

망분리 개선을 통한 기대 효과로는

- ①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
 - AI와 클라우드(SaaS) 기반의 업무 자동화, 전사적 경영관리(ERP :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준법 감시 프로그램 등 도입에 따라 금융권의 업무 생산성이 향상되고, 빅데이터 분석 등 금융 데이터의 활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인터넷 접속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연구·개발망의 활용도 제고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IT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으며, 연구·개발 환경 개선에 따른 금융권의 우수 IT 인력 유치 효과까지 기대

② 망분리 개선의 이익이 금융산업과 금융소비자의 효용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

- 생성형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예측 모델 고도화를 통해 다양한 특화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신용평가모델 고도화를 통해 중금리 대출의 저변을 확대하는 등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금융권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 Fraud Detection System) 고도화를 통해 부정거래, 신종사기 시도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당국은 8월 22일(목) 전 업권 업무 설명회를 시작으로, 9월까지 업권별로 업무 설명회를 개최하고, 규제샌드박스 신청 기업별 보안 역량, 사업 구조 등을 고려하여 부가 조건으로 지켜야 할 보안대책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임

그리고, 9월 중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접수받아 연내 신규 과제에 대한 혁신 금융서비스를 지정하고 이에 따라, 빠르면 올해 말부터 금융권에서도 생성형 AI 활용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됨

더불어, 연말까지 연구·개발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절차 또한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이며, 新 금융보안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거쳐 금융보안 법·체계 개편을 추진해 나갈 예정임

< 단계별 세부 추진과제 >

1단계(24년 연내 추진)	2단계	3단계												
① 생성형 AI 허용 (규제샌드박스) :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가명정보*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허용 * 추가정보 사용 없이는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	④ 1단계까지의 규제특례 정규 제도화 : 샌드박스로 성과 검증된 과제 → 규정 개정 등 제도화 추진 * ~'25.上 : 샌드박스 운영사례 성과검증	⑦ 「디지털 금융보안법(가칭)」 제정 * 연구용역(24.3Q), 공청회(4Q)를 거쳐 연내 마련 추진 - 자율보안-결과책임의 보안체계 구축 : 목표·원칙중심으로 규제 전환 - 금융권 책임 강화 : 배상책임 강화, 실효성 있는 과징금 등 : CISO 권한 확대 및 CEO·이사회 보고의무 - 금융당국의 점검·이행명령 등 금융권 보안수준 제고 뒷받침												
② 클라우드 이용 확대 (규제샌드박스) <table><tr><th></th><th>현 행</th><th>개 선</th></tr><tr><td>데이터</td><td>개인신용정보 금지</td><td>가명정보 허용</td></tr><tr><td>프로그램 유형</td><td>협업툴, 인사관리 등 비중요업무 허용</td><td>고객관리(CRM), 업무자동화 등 추가 허용</td></tr><tr><td>단말기</td><td>유선 PC만 허용</td><td>모바일단말 허용</td></tr></table>			현 행	개 선	데이터	개인신용정보 금지	가명정보 허용	프로그램 유형	협업툴, 인사관리 등 비중요업무 허용	고객관리(CRM), 업무자동화 등 추가 허용	단말기	유선 PC만 허용	모바일단말 허용	⑤ 규제특례 확대·고도화 : 개인신용정보 처리 등 리스크 ↑ 업무 → 강화된 보안대책 전제로 추가 허용
	현 행		개 선											
데이터	개인신용정보 금지		가명정보 허용											
프로그램 유형	협업툴, 인사관리 등 비중요업무 허용	고객관리(CRM), 업무자동화 등 추가 허용												
단말기	유선 PC만 허용	모바일단말 허용												
③ 연구·개발 분야 망분리 개선 (감독규정 개정) <table><tr><th></th><th>현 행</th><th>개 선</th></tr><tr><td>연구개발망 업무망 간</td><td rowspan="2">물리적 망분리</td><td>논리적 망분리</td></tr><tr><td>연구개발망 전산실 간</td><td>개발 결과물 등 이관을 위한 예외 허용</td></tr><tr><td>데이터</td><td>개인신용정보 금지</td><td>가명정보 허용</td></tr></table>		현 행	개 선	연구개발망 업무망 간	물리적 망분리	논리적 망분리	연구개발망 전산실 간	개발 결과물 등 이관을 위한 예외 허용	데이터	개인신용정보 금지	가명정보 허용	⑥ 제3자 리스크 관리강화 등을 위한 정보처리 위탁제도 정비		
	현 행	개 선												
연구개발망 업무망 간	물리적 망분리	논리적 망분리												
연구개발망 전산실 간		개발 결과물 등 이관을 위한 예외 허용												
데이터	개인신용정보 금지	가명정보 허용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8-14 시행

정보통신망의 해킹 등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야 하는 침해사고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며, 침해사고 신고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60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됨

이에 따라, **침해사고 신고의 시기 · 방법 · 절차와 침해사고 조치의 이행점검에 필요한 절차 및 침해사고 신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침해사고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 (제58조의2 신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침해사고의 발생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침해사고의 발생 일시, 원인 및 피해내용, 침해사고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및 연락처 등을 서면, 전자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후 침해사고에 관하여 추가로 확인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함

② 침해사고 조치의 이행점검 절차 (제58조의3 신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명령한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려는 경우에는 점검 목적 · 일시 · 방법 · 내용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점검 7일 전까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리도록 하되, 추가 침해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경우 등에는 미리 알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함

③ 침해사고 신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9 제2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3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2차 위반 시 600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침해사고 조치에 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750만원, 2차 위반 시 1천5백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천만원으로 정함

환경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8-17 시행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 변경으로 인한 지역배출허용총량 증가 등의 사유로 배출허용총량을 총량관리사업자에게 추가로 할당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배출허용총량 예비분을 보유하도록 하며, 사업자가 외부 감축활동으로 오염물질을 저감한 경우 배출량 산정 시 감축량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659호, 2023. 8. 16. 공포, 2024. 8. 17. 및 2025. 1. 1. 시행)됨

이에 따라, 전체 총량관리사업자 또는 일부 총량관리사업자에게 기본계획 변경으로 증가된 지역배출허용총량을 추가 할당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분의 용도에 따라 예비분의 보유 비율을 지역배출허용총량의 100분의 10 이내 또는 100분의 5 이내로 정하며, 사업자가 외부 감축활동을 하려는 경우 예상 감축량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폐가스 소각시설과 물리적·안전상의 이유로 대기오염물질의 실측이 곤란한 배출시설을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에서 제외하고,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자에 대한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 감량 비율을 낮추어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4조제4호 신설, 제5조제2항제2호, 제22조의2~5 신설, 제24조, 제24조의2 신설, 제24조의3 신설 등)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08-17 시행

사용이 종료되거나 폐쇄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의무를 승계한 자가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666호, 2023. 8. 16. 공포, 2024. 8. 17. 시행)됨

이에 따라, 사후관리 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후관리 의무 승계 신고서에 승계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등에게 제출하도록 정하는 한편,

집단급식소 등에서 다량으로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뿐만 아니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도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17조의4 신설, 제71조의2 신설, 제68조의4제1항제1호 등)

환경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08-17 시행

환경부장관은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증설 등의 사유로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추가로 할당할 수 있도록 하고, 총량관리사업자가 외부 감축활동으로 오염물질을 저감한 경우 배출량 산정 시 감축량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659호, 2023. 8. 16. 공포, 2024. 8. 17. 및 2025. 1. 1. 시행)됨

이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추가 할당을 신청하려는 경우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배출허용총량 추가 할당 신청서에 설치허가증 원본 등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 등은 제출받은 설치허가증에 추가 할당량을 포함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내주는 방식으로 추가 할당을 하도록 하며, 총량관리사업자가 외부 감축활동을 하려는 경우 예상 감축량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와 서식을 정하는 한편,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은 총량관리사업자가 방지시설을 증설·교체하는 경우 또는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을 증설·교체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종전에는 변경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변경 신고를 하도록 하고, 총량관리사업자가 배출량의 산정 결과를 월 단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다음 달 25일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제8조제1항, 제9조제2항제1호, 제9조제3항 단서 신설, 제12조, 제17조제1항, 제17조의2 신설, 제17조의3 신설 등)

국토교통부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8-17 시행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수시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운행중지명령의 근거를 마련하며,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원에 대한 안전교육의무 등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9686호, 2023. 8. 16. 공포, 2024. 8. 17. 시행)됨

이에 따라, 수시검사의 요청 및 연기 절차 등을 정하고,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운행중지명령의 절차와 해당 명령에 따른 주차장 확보 의무의 이행기간 등을 정하며, 보수업자의 보수원 안전교육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의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계식주차장 사고에 따른 피해 보상 강화를 위하여 보수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보험의 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건축되는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규제 완화 (제1조의2제1항)

- 주차장 외의 부분이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이 주차전용건축물로 인정되려면 종전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위치한 건축물의 경우 60퍼센트 이상만 주차장으로 사용해도 주차전용건축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함

② 기계식주차장치의 수시검사 요청 및 연기 (제12조의3제4항부터 제6항까지)

-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 등은 주요구동부의 부품을 변경하는 등의 경우 수시검사를 요청하도록 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검사를 받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검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함

③ 배상보험 의무 가입 대상 확대 및 배상보험 요건 강화 (제12조의7)

- 종전에는 보수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보험의 배상한도액 기준이 사고당 1억원, 피해자 1인당 1억원이었으나, 앞으로는 물적 손해의 경우 사고당 1억원, 인적 손해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시 1억5천만원, 부상 시 3천만원 등으로 그 기준을 강화함
-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운영하는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 등도 기계식주차장의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대 이상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자 등은 배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④ 기계식주차장 운행중지 시 기계식주차장 관리자 등의 주차장 확보 의무 (제12조의17 신설)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운행중지명령에 따라 운행이 중지된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 등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통보하는 기간 내에 인근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고, 이를 확보하지 않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근 주차장을 직접 확보하고 그 확보에 드는 비용을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 등에게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⑤ 보수업자의 보수원 안전교육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및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별표 6)

- 보수업자가 보수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그 기간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신설된 과태료 부과사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 기계식주차장에서의 사고 발생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위반기간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부과하던 과태료를 위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부과기준을 정비함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08-12 시행
(다만, 별표 4 제2호나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누구든지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위생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저장·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생용품의 신고·보고 사항 등에 대한 증명서 등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생용품 관리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영업자에게 발급하는 위생용품의 증명서의 종류, 신청 및 발급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위생용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할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17조의2 신설, 제21조제3항, 제21조의2제1호가목, 제26조의2 신설 등)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8-14 시행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05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됨

이에 따라,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 법령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제시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금지되는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구체화하며, 이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6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그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102조, 제102조의2 신설, 별표 20에제117호의2 신설)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산업통상자원부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8.12. ~09.23.

현행 전기공사업법은 5년 이내에 양도·양수·합병한 공사업을 다시 양도·양수·합병하는 경우 공사실적 및 경영기간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과 자율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실적승계 제한 기간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전기공사업 재승계시 공사실적 합산제한 완화 (안 제19조)

- 전기공사업의 재양도 등에 따른 실적승계 제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전화: 044-203-3896, 팩스: 044-203-4758)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8.12. ~08.22.
-------	-----------------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거주 의무를 최대 3년 간 유예할 수 있게 됨(「주택법」 개정, 3.19. 공포·시행)에 따라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가 가능하며, 거주 의무자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국가·지자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경매 또는 공매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경매 가능한 금융기관(「주택법 시행령」 제71조제1호 각 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각 목)에 미포함되어 있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의2호) 취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금융기관의 범위 확대 (안 제24조제8호)

-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추가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전화: 044-201-3326, 팩스: 044-201-5529)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8.08.
~09.19.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의 청약에 신청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자는 그 지위를 유지하면서 다른 청약에의 신청·당첨을 허용하며, 1983년부터 현재까지 월 10만원으로 유지되던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한도를 소득증가 및 소득공제 한도 변경 등 정책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월 25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 근거를 신설하고, 공익사업의 대토 보상자가 공동주택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우선공급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안 제2조, 제6조, 제10조)

- 예 부금 및 청약저축 해지 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을 허용
- 종전통장의 납입실적은 유지하되, 새롭게 신청가능한 유형의 청약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이후 납입실적을 인정

②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다른 청약 당첨 허용 (안 제7조, 제14조, 제57조의2, 제58조의5)

- 사전청약 당첨 지위를 유지하면서 다른 청약에의 신청·당첨을 허용하고, 당첨될 경우에는 종전 사전청약 당첨은 취소

③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액 상향 (안 제10조)

-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액을 당초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④ 공동주택용지 대토보상자 주택 우선공급 신설 (안 제31조의2)

- 대토보상자가 공동주택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우선공급 허용

⑤ 저출산·고령화 대응 자율공급 근거 마련 (안 제35조)

-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생 고령화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추천 특별공급 내에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전화: 044-201-3343, 팩스: 044-201-5530)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8.14.
~08.26.

국민주택채권을 경제환경 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현행 5년으로 일괄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의 만기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가 원활히 추진·운용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역활성화 사업 특례 금융보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택가격 대비 부채 비율이 임대보증 가입 기준을 초과함에도 임대사업자가 임대계약서 상 계약금액을 허위로 작성하여 임대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보증 관련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주택의 임대차 신고내역에 대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국민주택채권의 일률적 만기규정 개선 (안 제6조)**

- 국민주택채권의 만기를 기존에 일률적으로 5년으로 운영하던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개선

② **지역활성화 사업 특례 금융보증 근거 신설 (안 제21조제1항)**

- 지역활성화 사업 특례 금융보증 도입 근거 마련

③ **임대차계약 신고 자료제공 요청 근거 신설 (안 제25조의2제2항)**

-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요건 검증을 위하여 임대차 신고내역에 대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전화: 044-201-3343, 팩스: 044-201-5530\)](tel:044-201-3343)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4-08-12 제출

등기신청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서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며,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해서도 등기를 전자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서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기록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관련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신설 (안 제7조의2 신설)

-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
- 등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한 등기를 하고, 그에 따라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다른 때에도 해당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

② 상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신설 (안 제7조의3 신설)

- 상속·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

③ 등기사무의 정지 제도 개선 (안 제10조)

- 대법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이 발생하여 등기소에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④ 전자신청 방법의 개선 (안 제24조제1항제2호)

-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에 대해서만 전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기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함

⑤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에 대한 예외 신설 (안 제29조제7호)

-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의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에서 제외되도록 함

⑥ 신탁등기의 등기사항 신설 (안 제81조제1항, 안 제81조제4항 신설)

-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신탁재산에 속하

는 부동산의 거래에서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신탁원부의 공시기능을 강화함

⑦ 이의신청 방법의 개선 (안 제101조)

-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종전에는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여 이의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함

법제사법위원회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4-08-12 제출

등기신청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서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며,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해서도 등기를 전자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서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기록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등기소 관할의 확대 (안 제4조제2항 신설)

- 이 법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② 등기사무의 정지 제도 개선 (안 제7조)

- 대법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이 발생하여 등기소에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③ 전자신청 방법의 개선 (안 제24조제1항제2호)

-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에 대해서만 전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기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함

④ 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 (안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 새 본점의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종전의 본점 또는 새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⑤ 이의신청 방법의 개선 (안 제83조)

-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종전에는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여 이의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함

법제사법위원회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4-08-12 제출

현재는 법인의 주사무소나 본점 등기부와 별도로 분사무소나 지점 등기부를 두고 있어 신청인이 분사무소나 지점의 소재지에서 추가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각 등기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법인의 주사무소나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법인이 주사무소나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분사무소나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안 제1조, 제3조, 제3조의2 신설)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4-08-12 제출

현재는 회사의 본점 등기부와 별도로 지점 등기부를 두고 있어 신청인이 지점의 소재지에서 추가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각 등기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회사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회사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며,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등기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전문용어나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률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안 제13조, 제34조, 제181조 ~ 제183조 등)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1인)

2024-08-14 발의

현행법은 회사의 이사에게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충실의무를 부여하면서도 그 대상을 회사에 국한하고 있어 회사의 합병 등에 있어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유인이 부족한 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사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나아가 회사의 합병 등에 있어 불공정한 합병비율 등으로 주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이사에 합병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주의 이익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382조의3 등)

정무위원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의원 등 12인)

2024-08-12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행정제재를 위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함

그런데 법원의 판결로 보험사기 범죄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도 행정제재를 하려면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미 법원에 의하여 증명된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행정절차 진행에 1년 이상이 소요되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해당 기간 동안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은 보험영업을 할 수 있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범죄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청문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즉시 등록이 취소되도록 하며,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험설계사 등에 의한 보험사기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8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제86조제3항 단서 및 제5항 신설 등)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등 11인)

2024-08-12 발의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부당한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무효를 확인받기까지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수급사업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는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거래 계약에서의 부당한 특약은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도록 함으로써 원사업자가 문제 되는 특약을 설정할 유인을 제거하여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3조의4제3항 신설)

정무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2024-08-12 발의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통신중개업자와 통신판매업자 간 재화등의 대금 정산기한 등 중개자와 판매자 간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업계의 자율적인 영역으로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티몬과 위메프와 같은 대형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정산을 하지 못하면서 통신판매업자들의 경영상 어려움과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 또한,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해야할 재화등의 대금을 자의적으로 융통하여 사업상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판매된 재화등의 대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청되고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에도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재화등의 대금 정산기한을 소비자가 해당 재화등의 구매를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판매를 의뢰받아 판매한 재화등의 대금 보유와 관련하여 이를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은행에 예치·신탁하고, 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판매된 재화등의 대금을 제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통신판매업자의 경영 안정과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20조의4, 제20조의5 신설 등)

정무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1인)

2024-08-14 발의

현행법은 대부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1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업자 등록을 위한 문턱이 지나치게 낮음에 따라 불법대부업체들이 등록대부업체 명의를 돈을 주고 거래한 후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은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한 경우에도 계약에 따른 원금과 법정 최고이자를 보장하고 있어 불법적인 영업에 따른 이익을 근절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한편 최근 대부업체와 이용자를 연결하여 주면서 대부업체의 광고를 보여주는 대부중개플랫폼이 크게 성장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대부중개플랫폼 운영자는 대부중개업자로서 시·도지사에 등록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부족으로 해당 플랫폼에 대한 촘촘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현행법상 대부중개업자가 불법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되지만,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광고의 경우 대부중개로 보기 어려워 해당 조항의 적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부업자의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대부업자가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자계약 부분을 무효로 하면서 불법대부업자의 경우에는 그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며, 대부중개플랫폼을 활용하는 대부중개업자는 시·도지사가 아닌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불법대부업자의 대부중개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건전한 대부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3조제2항제1호의2, 제3조의5제1항·제2항, 제8조제4항, 제11조제1항, 제11조의2제1항, 제13조제2항 등)

정무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4인)

2024-08-14 발의

현행법은 금융위원회가 허가를 받은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에 한하여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경영 건전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등 경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나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들은 경영개선 조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그런데 등록 대상인 지불결제회사를 겸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거래 규모가 지난해 230조원으로 크게 늘어나 금융당국의 경영에 대한 감독권과 명령권을 허가 대상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영개선을 위한 감독과 규제를 허가를 받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니라 등록된 전자금융업자까지 확대하여 모든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의 경영개선에 대한 책임 및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임 (안 제42조제3항 및 제4항)

기획재정위원회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35인)

2024-08-14 발의

현행법은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출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안 첨부서류 중 하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에 있어서 조세지출 내역에 관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고 있어 결산심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입세출 결산과 함께 조세지출 내역을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가 「국가재정법」 및 현행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서 조세지출결산서를 추가하려는 것임 (안 제15조의2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34인)

2024-08-14 발의

현행법은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출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안 첨부서류 중 하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조세지출예산서에 개별 조세특례 중 어떤 항목을 포함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어 개별세법의 조세특례항목 일부는 작성대상에서 누락되는 등 조세지출에 대한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에 있어서는 조세지출 내역에 관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고 있어 결산심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입세출 결산과 함께 조세지출 내역을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별세법상 모든 조세특례에 대하여 조세지출예산서 및 조세지출결산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42조의2제1항 및 제142조의3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2024-08-14 발의

현행법은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공제기간 내에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으로부터 인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일부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특례를 두고 있음

한편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공제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어 일몰기한이 만료될 예정인데, 소상공인인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안 제96조의3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0인)

2024-08-14 발의

현행법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그 증가 인원 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숫자가 3만 4천여 명에 이르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의 실업률(4.5%)은 일반국민(2.7%)에 비하여 여전히 높고, 일반국민의 생계급여 수급률은 3.2%인데 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생계급여 수급률은 22.7%로 약 7배에 이르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전반적인 고용 상황은 매우 열악함

또한, 든든한 일자리는 자아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취업 취약계층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고용 지원제도는 우리 사회의 통합과 통일 대비 기반을 다져나가는 데 중요한 요소이나, 현재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인센티브도 없는 상황임

이에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게 친화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 (안 제29조의8제1항제1호)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1인)

2024-08-14 발의

현행법은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병원선은 도서 주민을 대상으로 무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비 등 병원선 운영에 대한 세제지원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면제 특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업인 또는 도서 주민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선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려는 것임 (안 제106조의2제1항제3호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0인)

2024-08-14 발의

현행법은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소유한 세대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이자 상환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소득공제 기준이 되는 주택의 기준시가 6억원은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금리 인상기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주택 구매 수요자의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기준시가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근로소득금액 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및 주택분양권의 기준시가를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안 제52조제5항)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2024-08-14 발의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양식어업 등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 어로·양식어업의 비과세 한도를 연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어로·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해당 한도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천일염생산업은 비과세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어로·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과 천일염생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간 과세형평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로·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전액 비과세되는 소득으로 하고, 천일염생산업을 비과세소득 대상 사업으로 포함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제2호)

기획재정위원회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2024-08-16 발의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나 뿌리 혹은 연초에서 나오는 천연니코틴이 아닌 합성니코틴을 사용하여 제작하는 유사담배가 유통되고 있음. 이러한 유사담배는 담배만큼이나 중독성이 있고,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각종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담배의 정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담배의 원료를 연초의 전부 또는 니코틴 전체로 확대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호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2024-08-13 발의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숏폼의 추천 알고리즘에 노출되어 중독을 겪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단 지적이 나오고 있음.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체 연령대 중 청소년(36.7%)이 온라인 숏폼 동영상 이용시간 조절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음

미국, 프랑스, 유럽연합, 대만 등 다양한 국가에서는 이미 청소년의 스마트폰 및 SNS 사용 제한을 하고 있음. 이처럼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보호 및 규제가 국제적으로 진행되자 한국에서도 청소년의 SNS 사용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SNS 일별 이용 한도 설정과 중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친권자등의 확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SNS 과몰입을 예방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항제14호 및 제42조의4 신설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등 15인)

2024-08-14 발의

최근 정보통신망에서 사실 또는 거짓의 정보를 유포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가해자가 정보통신망에 자극적인 정보를 올림으로써 큰 수익을 얻는 사례가 빈번하여 범죄예방효과가 미약한 측면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및 불법정보를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가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안 제44조의11 신설 등)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사회,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급속한 디지털화의 진행으로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하지만, 관련 기술에 대한 개인의 접근능력과 활용역량의 차이는 단순한 생활에서의 불편함을 넘어 경제·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이전보다 심화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구성원 누구나 디지털을 잘 활용하고, 소외와 차별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도록 하여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디지털포용 증진법」 제정을 통해 디지털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본 틀을 마련하면서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 육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본 법의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②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소외와 차별 없이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고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는 환경 조성 및 그 지향점을 “디지털 포용”이라 정의함 (안 제2조)
- ③ 디지털포용 증진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5조 및 제6조)
- ④ 사회구성원의 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해 관련 활동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의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품질인증 제도, 우선 구매 촉진 등의 방안을 상세하게 제시함 (안 제12조부터 제27조까지)
- ⑤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기술·서비스 표준화, 유망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 지정 등에 대한 지정 및 지원, 사회적 기업의 지능정보화 사업 참여 촉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등 18인)

2024-08-14 발의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모바일콘텐츠 서비스는 국민 생활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이는 앱 마켓시장에서 다수의 이용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들이 기여해 온 상호작용의 결과임

그러나, 스마트폰에 필수적인 모바일 OS를 통해 앱 마켓 시장을 선점한 사업자들이 앱 결제방식 제한, 자기 앱 마켓 이용 등을 강제하면서 이용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들의 선택권은 상당히 제한되고, 대형 앱 마켓 사업자의 독점은 더욱 고착화되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한 바 있으나, 일부 앱 마켓사업자들은 자기 앱 마켓 외부에서의 결제를 여전히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모바일콘텐츠 사업자가 제3자 결제를 이용할 경우 해당 앱 마켓 이용 대비 실질적으로 같거나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법 조항을 우회하거나 회피하고 있는 실정임

반면, 우리나라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법 제정에 주목한 EU, 영국 및 일본 등에서는 대형 앱 마켓사업자에게 자기 앱 마켓 외부에서의 결제방식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EU에서는 DMA(Digital Market Act)에 따라 애플이 자기 앱 마켓에서만 결제를 강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법 위반으로 제재를 진행 중인 상황임

이에 앱 마켓사업자가 자기 앱 마켓 외부에서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다른 결제방식을 허용하도록 하여 이용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결제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에 따른 경쟁활성화를 통해 이용자와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50조제1항제9호 개정 및 제50조제1항제9호의 2 신설)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2024-08-13 발의

현행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외지인들이 농촌지역의 토지를 싼값에 임차하여 무분별하게 개발함에 따라 마을 주민인 농업인들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이로 인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하여 조례를 통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에너지 전환정책의 일환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의 확대가 필요하고, 농지를 보전하면서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주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인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우선구매, 컨설팅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재생에너지 생산·보급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모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②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 (안 제3조)
- ③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 (안 제6조)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
- ⑤ 정부는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생산된 전기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 시책 등을 마련하여야 함 (안 제11조)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재정적 지원 및 송전·배전 시설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 ⑦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안 제16조)
- ⑧ 자료제출을 요구받고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안 제17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2024-08-12 발의

현행법은 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가스(LPG)의 충전을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LPG충전소에서만 충전을 허용하고 자가충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2010년 이후 LPG차량 등록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전기차·수소차로의 급속한 전환, 인건비 상승 등 LPG충전소의 경영환경 악화로 휴업·폐업하는 충전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LPG자동차의 자가충전이나 LPG충전소의 전기·수소 등 친환경연료 충전소로의 전환이나 설비의 추가 설치 등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LPG차량이 LPG충전소에서 자가충전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현행 LPG충전소가 미래 용·복합충전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친환경연료 충전소로의 전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쇠퇴하는 LPG충전소의 정의로운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임 (안 제29조제1항 및 제46조의2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20인)

2024-08-12 발의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의 확대와 함께 충전시설도 증가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폭발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바, 충전시설의 설치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사업자 등에게 보험을 가입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바, 최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종종 발생하는 화재와 폭발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이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충전시설의 위치·설치수량 등을 신고하도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충전시설에서 화재, 폭발 등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안 제21조의2 신설 및 제52조제2항)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8인)

2024-08-12 발의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기술유출이 심각해지고 온라인을 통한 해외로의 기술탈취가 증가하고 있음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적발 건수는 2019년 14건, 2020년 17건,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으로 집계됨

하지만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침해행위 금지와 관련된 벌칙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위반행위가 엄중함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

2017 2021년까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된 제1심 유죄 판결 중 유기징역(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62%에 불과한 반면, 무죄와 집행유예는 741%로 대부분 낮은 형량이 선고되고 있어 처벌수위를 높여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산업기술유출범죄에 있어 의회에 대한 보고의무, 목적범이 아닌 고의범 처벌규정 마련, 민사적 구제 강화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처벌의 법적 집행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법원은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원고의 신청에 따라 임시로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의2제4항 신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산업기술의 유출 현황 및 시정 방안 등의 보고서를 매년 2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안 제17조의2 신설)
- ③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해당 행위를 한 자는 6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안 제36조제1항)
- ④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해당 행위를 한 자는 3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함 (안 제36조제2항)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2024-08-13 발의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자동차는 주행 중 뿐만 아니라 충전 중에도 화재가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지하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화재가 발생할 시 소방차량 진입 문제 등으로 인해 화재 진압에 차질이 생겨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용수시설, 소화수조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1조의2제3항 및 제16조제1호·제2호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3인)

2024-08-13 발의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거나 주차 중인 전기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안전 위험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대부분의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이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인력과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큰 상황임

이에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상에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화재 발생시 진압을 신속히 하고 대형 참사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안 제11조의2제5항 후단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김성환
의원 등 29인)

2024-08-13 발의

현재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부지 내에 설치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에 저장하고 있으나, 저장용량의 포화로 임시저장시설을 증설한 월성 원전을 포함하여 한울원전, 고리원전, 한빛원전 등이 8년 내로 수용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됨. 하지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영구적으로 처분하기 위한 처분시설의 건설은 부지 선정을 위한 절차조차도 마련되지 않은 실정임

이미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는 물론, 가동 중인 원전의 운영을 위해서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건설은 시급한 사회적 과제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반감기가 수십 년에서 수십만 년에 이르기 때문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입지 선정은 지질적 안정성과 지역주민의 수용성 모두를 만족해야 함. 따라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관리시설의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민주성과 투명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를 법으로 규정하고 관계 조직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함

제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음. 그러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마련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므로 입법부 차원의 논의와 법령 제정을 시급히 진행할 필요가 있음

본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두어 기본계획 등 관련 정책 수립과 영구처분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절차와 책무를 규정하는 특별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및 관리시설 부지의 조사·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함 (안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 ②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 등 다양한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절차를 거치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 ③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수립함 (안 제20조)
- ④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후보부지를 도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후보부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기본조사 대상부지를 선정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함 (안 제21조)
- 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기본조사 결과를 평가하여 부지적합성 심층조사 대상부지를 도출하고, 도출된 심층조사 대상부지에 대하여 심층조사를 실시함 (안 제22조)
- 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심층조사 결과를 평가하여 관리시설 예정부지를 도출하고,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리시설 부지를 최종 선정함 (안 제23조)
- ⑦ 최종 선정된 관리시설 부지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해당 지역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 ⑧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지하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안 제30조)
- 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관리시설 건설공사 중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부지적합성 조사 과정에서 주민동의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재난 등으로 인해 관리시설 건설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관리시설 부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1조)
- ⑩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관리기준을 정하고 관리기반 조성을 위하여 관리사업자에게 기반조성 계획을 수립하게 하며,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 ⑪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저장시설을 건설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부지내 저장시설의 저장용량 제한 등 사용후핵연료의 부지내 저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6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2인)

2024-08-14 발의

현행법은 사업주관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에너지수급·영향을 분석하고,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그 평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협의하는 “에너지사용계획협의” 제도를 두고 있으며, 한국에너지공단이 위탁을 받아 에너지사용계획 검토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사용계획 검토시 신·재생에너지사용량이 총에너지사용량의 0.4% 이상인 경우 에너지이용계획을 적절한 것으로 판단 심사를 생략하고 승인해주고 있어, 에너지사용계획협의

제도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이용의 촉진방안이 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산업단지개발사업 사업주관자가 사업실시 및 시설설치 전에 수립·제출하는 에너지사용계획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의 공급과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제1항 후단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2인)

2024-08-14 발의

현행법은 산업의 집적 활성화, 공장의 원활한 설립 지원,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산업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 단위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기업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RE100'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재생에너지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아직 저조하여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집적해있는 산업단지를 필두로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기업 등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3조제2항제3호)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2인)

2024-08-16 발의

최근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해 건물 내 태양광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특히 EU의 경우 주거용보다 산업용 건물 지붕에 발전설비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 정부도 태양광의 효율적인 보급을 위해 2030년까지 산업단지에 6GW 규모의 태양광을 직접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태양광 입지 확보, 인·허가 기간 단축, 설비운영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입주기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촉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산업단지 내 저조한 태양광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이러한 계획 외에도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산업단지 공장건축물 내 제조시설 설치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공장건축물의 지붕·옥상 등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고 태양광의 지속가능한 보급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안 제14조의3제1항)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0인)

2024-08-14 발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은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원안보 추진체계,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 관리, 위기대응체계 등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2025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동 법은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주요국의 자원 무기화 추세가 심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지정학적 위기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에너지·자원 분야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가 매우 중요한 상황임을 인식하여 마련된 것임

그런데,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방위협정을 체결하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우라늄 공급에 대한 국제적인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러시아는 세계 우라늄 농축시설의 4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우라늄과 같은 핵심자원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국가 안전보장은 물론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있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핵심자원인 우라늄 등에 대한 공급원 다변화 및 공급망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필요시 수의계약을 허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유사시 국가안보를 위한 핵심자원 구매 및 조달에 안전성을 기하려는 것임** (안 제34조)

환경노동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4인)

2024-08-12 발의

기후대응보증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성과 기술성 평가 외에도 고효율 설비 도입이나 탄소저감 효과가 있는 제품·기술에 대한 탄소감축량을 산정하여 평가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기획재정부 고시)에서는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 보증계정을 설치하여 기후대응보증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재정법」에서는 정부가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에 출연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후대응보증사업의 경우 법률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고시와 정부지침에 근거하여 보증계정을 설치하고 기후대응기금으로부터 출연을 받아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기후대응보증사업을 위해 별도계정을 설치해 운영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후대응보증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게 하고, 나아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적 기후위기를 예방하려는 것임 (안 제72조제3항)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3인)

2024-08-13 발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임금체불액은 무려 1조 7,845억 원에 달하여 역대 최대액을 돌파했으며, 전년도(2022년)보다도 4,373억 원이나 증가했음

아울러 2023년 직장갑질119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43.7%가 임금체불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특히 비정규직의 임금체불 경험은 정규직보다 10%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취약 노동계층일수록 임금체불 피해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음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임금체불에도 노동자들은 '사정이 어렵다'며 기다려달라는, 양해를 강요하는 사업주에게 대항하지 못하다가 결국 체불임금 포기 합의를 종용받거나 사직서를 내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임

이에 우리나라에 만연한 노동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체불임금의 신속한 청산을 통해 노동자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노동자의 체불임금에 대하여도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연장하며, 고의 또는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징벌적 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체불임금을 계속 변제하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근로자도 임금체불 발생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안 제37조)
- ②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3년)를 「형사소송법」에 따른 임금체불 형사처벌 공소시효(5년)와 일치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임금에 관한 중요 서류의 보존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안 제42조 및 제49조)
- ③ 명백한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체불임금액의 3배 이내에서 징벌적 금액을 지급할 것을 근로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지급 액수를 최종 결정하도록 함 (안 제43조의4 신설)

- ④ 사용자가 체불임금의 전액을 변제 또는 공탁한 경우에만 임금체불을 반의사불벌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9조제2항 단서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1인)

2024-08-13 발의

현행법은 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야간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하고,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8시간 이내), 100%(8시간 초과)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면서,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대장에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과 임금액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등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사용자가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산정·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임금 총액의 형태로 일괄지급하거나 기본급만 산정한 채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항목을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따라 가산되는 금액을 각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거나 이를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형태의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동시에, 임금대장의 기재사항에 ‘실제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수’를 추가하고, 근로자가 임금대장에 대한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수에 대한 정확한 기록·관리 및 임금산정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2조의 2 신설 및 제48조 등)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1인)

2024-08-14 발의

현재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제60조). 2018년 법률 개정을 통해 1년 미만 근로자도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자는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실제 연차 유급휴가 사용률은 저조하다는 문제가 제기됨. 2023년 9월 발표된 연차휴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한해 동안 유급연차휴가 사용은 약 8.6일(소진율 6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장시간 노동이 전 사회적인 관심사 중 하나이고 노사정 모두 장시간 해소에는 공감대가 있는 편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2024년 6월 21일부터 ‘일·생활 균형위원회’를 발족하는 것은 이런 취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됨

OECD 회원국 중 장시간 노동과 산업재해가 높은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유럽연합(EU) 주요 회원국 수준의 연차휴가를 보장하여, 과로사회로부터 벗어나 ‘일과 삶의 균형’ 및 ‘실노동시간 단축’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을 1년 계속근로 및 8할 이상의 출근에서 6개월 이상 근로로 완화하고 최대 25일에서 30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연차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 등을 금지함으로써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하려는 것임 (안 제60조 제1항, 제4항 개정, 제8항 신설, 제60조의2 신설, 제116조)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1인)

2024-08-16 발의

현행법은 근로시간, 연장 및 해고의 제한 등 주요 내용의 적용 대상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면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이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법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이 법의 취지 및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건을 충족할 여건이나 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에 대해,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과 국가의 근로 감독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것임. 또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세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11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1인)

2024-08-13 발의

현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노동시간(1,874시간)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시간 근로는 과로사, 건강권 침해, 노동환경 악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함. 이 같은 현상은 단순한 개인의 건강 문제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내수 경제 침체와 저출생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됨. 노동자들의 과도한 근로는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시간 부족으로 인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렵게 만들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함

장시간 근로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자리잡아야 함. 이를 통해 노동자들은 보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며, 기업 또한 생산성을 높이고 인재를 유치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이에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장시간 근로 해소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신설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러한 노력을 통해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조정과 노동환경 개선을 이루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며, 더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안 제10조제2항제9호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3인)

2024-08-14 발의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로 인해 실외에서 일하는 노동자 및 냉난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실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온열·한랭질환 발생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노동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건강장해 예방조치가 현장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에 폭염, 혹한 및 다습 등의 기상여건이나 고열작업 등에서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명시하여, 폭염·한파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등)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0인)

2024-08-16 발의

현행법은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판단으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이른바 ‘작업중지권’을 부여함

그런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배달종사자에게도 근로자의 경우와 유사한 위험이 있음에도 이들에 대하여는 작업중지권이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에게도 작업중지권을 부여하여 이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안 제5조 및 제52조)

건축안전모니터링 제도는 건축물 구조설계 오류, 시공불량, 부실자재 사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4년에 도입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건축안전모니터링의 정의, 관계자의 의무와 권한, 모니터링업무의 위탁 근거, 모니터링 방법 및 결과 조치 등에 대한 사항이 미흡하여 사업의 효과와 실행력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건축안전모니터링의 정의와 내용, 자료제출·점검 등 근거, 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재설계·보강·공사 중단 등의 조치, 모니터링업무의 위탁근거, 결과조치 위반에 따른 벌칙규정 등을 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이 설계·시공 단계에서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안전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 건축공사장 등 점검, 시료 채취 등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규정함 (안 제68조의3 제1항 및 제3항 신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하여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이 적절한지를 검토하도록 함 (안 제68조의3제2항)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안전모니터링과 관련된 관계 기관의 장에게 건축안전모니터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8조의3제4항 신설)
- ④ 건축안전모니터링 위탁기관은 건축안전모니터링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보고를 받은 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를 건축관계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안 제68조의4제1항 및 제2항 신설)
- ⑤ 건축안전모니터링의 결과 설계·시공이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설계, 보강, 공사 중단, 사용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허가권자는 제출받은 조치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안 제68조의4제3항 신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안전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2조 제5항 신설)
- ⑦ 건축안전모니터링 전문기관의 임직원에게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 (안 제105조제4호의2 신설)
- ⑧ 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 (안 제110조제13호 및 제111조제9호 신설)
- ⑨ 건축안전모니터링 업무방해 및 자료제출을 거부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안 제113조제1항제6호·제7호 및 제2항제6호의2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1인)

2024-08-14 발의

현행 기계설비법은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로 하여금 열원설비, 냉난방설비, 공기조화 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건축법상 창고시설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한편, 물류센터의 경우 내부에서 노동자가 업무에 종사하는 공간임에도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분진과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이에 따라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물류센터를 건축법상 창고시설에서 별도의 생활물류시설로 구분하여 물류센터 내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환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분진과 폭염 등으로부터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안 제2조)

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4인)

2024-08-14 발의

현행 제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규정을 갖추고 있음

그런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만 치중한 나머지,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에 필요한 화재 안전 사항은 전무한 실정임. 특히, 지하주차장 등 실내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는 진화가 힘들어 주변으로 불길이 번져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음

이에, 새로 설치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대하여는 방화 셔터를 포함한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하여, 전기자동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49조제6항)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2024-08-12 발의

현행법상 현재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신차를 출시할 때 차량의 크기와 무게, 최대출력, 전비, 배터리 용량 등은 안내하지만 배터리 제조사 또는 제품명 등 상세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음

지난 1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40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렸고, 주차장 내부 온도가 1,000도 이상 넘게 치솟으며 지하 설비와 배관 등이 녹아 480여 세대의 전기와 물 공급이 끊기는 상황이 발생했음

문제는 화재가 발생한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가 당초 중국 배터리 1위 업체인 CATL 제품이 탑재된 것으로 잘못 알려졌다가 국토부 조사를 통해 10위권 업체인 중국 파라시스 제품이 탑재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전기차 제조사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영업기밀 등을 이유로 배터리의 정보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이에 **전기차 제조사들이 배터리 제조사를 차량 제원 안내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전기차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자 함 (안 제30조제4항 단서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5인)

2024-08-13 발의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로 인하여 전기차 사용자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에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 등록번호, 소유자, 원동기 형식 등 자동차의 주요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기차의 경우에는 주요 구성품인 배터리의 제조사, 제조일, 구성물질, 전압, 용량 등 배터리의 주요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한계가 있었음. 이에 자동차 등록원부에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주요 정보를 기재하여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고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함 (안 제7조)

한편, 최근 발생되고 있는 전기차 화재는 장착된 배터리, 즉 구동 축전지에서 화재가 발생되고 있어서 화재 발생 이전에 구동축전지의 이상(異常) 유무를 즉각 감지하고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검사를 받도록 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 제작자들은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의 전류, 전압, 온도 등 이상(異常) 상황의 발생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도록 하고 (안 제31조의5제1항), 이상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전기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즉시 검사를 받도록 하며 (안 제31조의5제2항), 전기자동차 소유자가 즉시 검사를 받지 아니할 경우 전기자동차 제작자들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안 제31조의5제3항), 통지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를 위하여 소방당국의 협조를 받아 견인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안 제31조의5제4항)

국토교통위원회

중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1인)

2024-08-12 발의

드론은 촬영, 취미·레저를 넘어서 건설관리, 방재, 재난·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최근에는 운송으로 활용범위가 확대되는 등 신성장 산업 분야로 지속적인 규제 혁신이 중요하나, 현재 드론 관련 법률은 유인기 중심의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 체계에서 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의 일부로 분류하여 규율하고 있어

기술 변화에 따른 적시 대응에 한계가 있고, 국민들과 관련 사업자들이 법 규정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음

또한, 항공기급 대형드론인 무인항공기의 경우 유인항공기와 공역을 동시에 사용하고 국제 간 이동도 가능하여 현재의 항공 관련 법률 체계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으나, 대형드론 외 중소형드론은 유인항공기와 공역이 분리·운영될 뿐 아니라, 국내 비행에 한정되고 운영 성격이 달라 현행「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에서 분리하여 중소형드론의 특성에 부합하는 안전 및 사업관리의 필요성이 있음

한편, 드론산업 육성에 대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이 법은 드론 활용의 촉진을 위한 발전 기반 조성 및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기체신고, 조종자격 및 사업체 관리 등 드론 안전관리와 사업에 관한 사항을 모두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중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중소형드론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사업환경을 조성하고 기술 발전에 따른 규제혁신 수요에 적시 대응하며, 중소형드론에 대한 안전 등 대국민 이해를 높여 국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기체 신고, 안전성 인증, 조종자 증명 등 중소형드론의 관리 및 조종자에 관한 규정을 찾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규정함 (안 6조 및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② 중소형드론 안전 확보를 위해 기체, 통신기술 등 비행안전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의 근거를 마련함 (안 제8조)
- ③ 교관의 비행 및 교수능력 등 지식과 기량에 대한 검증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와 교육 품질 제고를 위해 교관에 대한 증명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함 (안 제12조)
- ④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에게 조종자 증명을 제외하는 특례 근거를 마련함 (안 제13조)
- ⑤ 안전한 드론 운용을 위한 가시권, 비가시권, 군집비행 등 드론비행을 위한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안 제15조)
- ⑥ 중소형드론의 활용범위 확대 및 기능 고도화에 따라 안전한 운용환경 조성을 위한 식별장치 등 무선설비를 장착·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9조)
- ⑦ 드론안전 확보를 위한 관련 자료제출 요청 및 현장조사, 선제적 사고예방체계 마련을 위한 드론안전 자율보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안 제21조 및 제22조)
- ⑧ 중소형드론 활용 추세에 맞추어 사용운송사업, 정비업 및 대여업으로 구분하고, 등록·합병·휴폐업 등 체계적 사업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 (안 제25조부터 제46조까지)

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24인)

2024-08-13 발의

현행법은 조합 총회의 의결권 행사방식으로서 직접 출석, 서면, 대리인 출석 및 전자적 방법을 규정하되, 전자적 방법의 경우에는 재난 발생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서면 의결권 행사방식의 경우 서면의결서 취합, 행정보조직원의 고용 등 절차 및 비용 측면에서의 비효율, 의결서 진위여부에 대한 잦은 분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서면 방식 대신 전자적 방법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합 총회의 의결권 행사방식으로서 서면 방식을 삭제하고 전자적 방법을 일반적인 의결권 행사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총회 의결을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조합 총회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45조제5항 등)

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2024-08-13 발의

현행법은 주택조합의 해산 절차와 관련하여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조합 설립인가가 지체되는 등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해산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와 달리 사업이 법정 절차대로 추진되어 종료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해산 절차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사업종료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을 해산하지 않고, 조합의 임원이 조합의 이익금을 유용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주택건설 사업이 완료된 이후 소관기관의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도록 하고, 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총회를 이 기간 내에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주택조합의 해산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종료 후 주택조합의 해산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14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

현행법은 전기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이 경우 충전시설도 포함하여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차장에 충전 중이거나 주차 중인 전기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주차장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마련되고 있지 않아 친환경적 자동차의 화재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주차장에 친환경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 전용 스프링클러의 설치 등 화재안전성능보강과 화재진압용 노즐, 소화수조, 질식소화 덮개 등 소화용수설비를 갖추도록 법률로 정함으로써 친환경적 자동차로 인한 화재 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도모하고 주차장 이용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안 제6조제5항 신설 등)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상임(특별)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과방위	전체회의	8/21(수) 10:00	-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
외통위	법안심사소위	8/20(화) 10:00	- 법안 심사(외교부, 통일부 소관)
행안위	전체회의	8/20(화) 10:00	-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8/19(월) 10:00	- 법안 상정
	중기소위	8/19(월) 14:00	- 법안 심사
	산업특허소위	8/20(화) 10:00	- 법안 심사
	전체회의	8/21(수) 10:00	- 법안 의결
복지위	전체회의	8/20(화) 10:00	- 2023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상정 - 법안 상정
	예산결산심사소위	8/21(수) 14:00	- 2023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
	법안심사제1소위	8/22(목) 10:00	- 법안 심사
	법안심사제2소위	8/23(금) 10:00	- 법안 심사
환노위	전체회의	8/19(월) 10:00	-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김문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	8/19(월) 14:00	- 법안 심사
	국토법안심사소위	8/20(화) 10:00	- 법안 심사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8/19(월) 09:30	희귀 난치 질환자들을 위한 정책 진단과 제언	남인순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8/19(월) 10:00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위한 고등교육 정책방향 및 입법과제	김민전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8/19(월) 13:30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합리적 제도화 방안	김윤·한지아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8/19(월) 14:00	2024년 세법개정안 비판적 평가와 바람직한 대안 모색	정태호·차규근 의원실 등	의원회관 3간담회실
	8/19(월) 14:00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인도주의 포럼 창립총회 및 특별세미나	이재정·안철수 의원실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8/19(월) 14:00	제1회 K방산 중소기업 진흥 토론회	강선영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8/19(월) 15:00	대학정책 기초, 어떻게 바꿀 것인가?	백승아·진선미 의원실 등	의원회관 5간담회실
	8/20(화) 10:00	[제2기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 창립 총회 및 세미나] 가자! 행복국가로!	윤호중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8/20(화) 10:00	에너지전환시대 농어업용 전기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이원택·어기구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8/20(화) 10:00	자원안보 시대 산유국의 꿈, 시추는 대박이다	강승규 의원실	국회도서관 소 회의실
	8/20(화) 10:00	재정·조세정책 개혁방안 : 재정건전성 논쟁과 재정의 역할	최기상 의원실	의원회관 10간담회실
	8/20(화) 11:00	K-뷰티 산업 미래와 발전 방향 모색	오세희 의원실	의원회관 1간담회실
	8/20(화) 14:00	경기·강원 북부권 도로 이대로 좋은가!	한기호·허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8/20(화) 14:00	국회노동포럼 출범식 및 심포지엄	이학영·이용우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8/20(화) 14:00	장애인 게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세액 공제 필요성 정책토론회	강명구 의원실	의원회관 8간담회실

	8/20(화) 14:30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 창립총회	조배숙·유동수 의원실 등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8/20(화) 15:00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보	백승아·김영호 의원실 등	의원회관 11간담회실
	8/20(화) 15:30	정신의료기관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신의료계 환자단체 간담회	김윤 의원실	의원회관 2공용회의실
	8/20(화) 18:30	2024 미국 대선 Pathfinder. 1강 - 바이든 이후, 트럼프vs해리스 - 미국 정치의 두 얼굴	위성락·김태선 의원실 등	의원회관 9간담회실
	8/21(수) 07:30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 제2차 세미나	정성호·민홍철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8/21(수) 09:50	AI, 미래 기업 경영과 보안 비즈니스 컨퍼런스	고동진·안철수 의원실 등	국회도서관 강당
	8/21(수) 10:00	(Do No Harm) 인권환경 보호를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의 미래 국회토론회	정태호·이용우 의원실 등	의원회관 8간담회실
	8/21(수) 10:00	(국민중심 의료개혁 완수) 지역완결적 보건의료체계 확립 을 위한 국회토론회	김윤 의원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8/21(수) 10:00	미래패치워크시리즈 두 번째 - 글로벌 위기적응 인구 X 재난	차지호 의원실	의원회관 7간담회실
	8/21(수) 14:00	국가비전2050포럼 창립총회 및 기념특강	박수민·정성국 의원실 등	의원회관 3간담회실
	8/21(수) 14:00	주한미군 공여지 올바른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 회 : 캠프레드클라우드(CRC)를 중심으로	박지혜 의원실	의원회관 1간담회실
	8/21(수) 14:00	폭염에 전기요금 폭탄! 누진제 이대로 괜찮은가?	곽상언 의원실	의원회관 4간담회실
	8/21(수) 14:00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 : 간접죄 처벌 강화	장동혁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8/21(수) 16:00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의 독과점 폐해 혁파를 위한 토론회	박주민·임미애 의원실 등	의원회관 5간담회실
	8/22(목) 07:30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김기현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8/22(목) 10:00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	이훈기·김현 의원실	의원회관 8간담회실

	8/22(목) 10:00	재정·조세정책 개혁방안 : 불평등 해소를 위한 조세개혁 방안	최기상 의원실	의원회관 10간담회실
	8/22(목) 11:00	국회 미디어발전 포럼 0503 창립총회 및 기초발제	김현·신장식 의원실 등	국회 귀빈식당
	8/22(목) 14:00	[K-방산혁신포럼] - 무기체계 제안서 작성 및 평가방식의 문제와 해법	한기호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8/22(목) 14:00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의 남양주 설립을 위한 토론회 - 남양주가 최적지인 이유	최만희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8/22(목) 14:00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인건비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박홍근·용혜인 의원실 등	의원회관 7간담회실
	8/22(목) 14:00	리걸테크 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공청회	권철승·박지원 의원실	의원회관 8간담회실
	8/22(목) 14:00	비급여 의료비 관리 및 실손보험제도 개선방안	최보윤 의원실 등	의원회관 5간담회실
	8/22(목) 14:00	플랫폼 독점화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 세미나 1차 - 모빌리티 정의와 이동적 공유재	박정 의원실 등	의원회관 11간담회실
	8/22(목) 18:30	2024 미국 대선 Pathfinder. 2강 - 미국 대선과 중국, 그리고 세계	위성락·김태선 의원실 등	의원회관 8간담회실
	8/23(금) 14:00	'서남권 으뜸도시 영등포'로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영등포 발전 전략과 과제	채현일 의원실	시립 문래 청소년센터 1층 공연장
	8/23(금) 14:00	금융공공성 확보를 위한 금융감독 강화 방안	김남근·김현정 의원실 등	의원회관 8간담회실
자료집 등	8/19(월)	「THE 현안」 제24호 발간 - 넷제로(Net-Zero), 탄소와의 전쟁	국회도서관	
	8/21(수)	「World & Law」 2024-15호 발간 - 중산층을 위한 사회주택이 있다고?		
	8/21(수)	「Data & Law」 2024-9호 발간 - 데이터로 보는 우주항공산업		
	8/21(수)	「금주의 서평」 제692호 발간 - 도서명 : 도시논객 - 저자 : 서현		

	8/23(금)	「NABO 경제동향」 제44호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8/21(수) 10:00	2024 국정감사 이슈분석 발간기념 토론회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처 대회의실
	8/19(월)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05호 발간 - 국회 미래위원회, 정부 미래세대부 신설로 대전환기에 대응	국회미래연구원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47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8/12(월) 14:00	"STOP, 사이버불링" : 대한민국에서 사이버불링을 멈추기 위한 간담회	김영배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8/12(월) 14:00	가축분뇨 대란 위기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이원택 의원실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8/12(월) 14:00	아리셀 화재 유사 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화성공장 화재 대책과 개선 방향 토론회	용혜인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8/13(화) 14:00	우리 아이 SNS 안전지대 3법 토론회	조정훈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8/14(수) 14:00	글로벌중추국가 비전구현을 위한 상무정신 고양방안	유용원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8/16(금) 10:00	가짜뉴스 방지하는 플랫폼! 공적책임 강화 정책토론회	김장겸 의원실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자료집 등	8/14(수)	「이달의 입법민원」 (2024. 7월호) 발간	국회사무처	
	8/12(월)	「THE 현안」 제23호 발간 - 극한기후와 자연재해	국회도서관	
	8/13(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52호 발간 - 미국의 고령자 보호를 위한 금융서비스 입법례		
	8/14(수)	「금주의 서평」 제691호 발간 - 도서명 : 중독의 역사 저자 : 칼 에릭 피셔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8.12~08.18)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8/13(화)	중대재해	대학교에서 벌목 작업 중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8/13(화)	소송	태양광발전장치 업체들의 직접생산확인 기준 위반을 이유로 한 조달청 제재처분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8/16(금)	지적재산권	뮤지컬에 사용된 음악을 2차적저작물로 인정하고, 저작권관리단체가 신탁 사실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이증양수의 경우에도 대항할 수 없다고 본 사례
8/16(금)	동남아시아	싱가포르 리츠(S-REITs) 차입한도 완화 고려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성재열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